

규정관리규정

제정 : 2011.06.01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2.06.01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09.01
개정 : 2022.02.16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0.03.01.>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의 각 행정기구, 부속기관, 부설기관 등의 제 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제규정” 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 규범을 말한다.
2. “규정” 이라 함은 본교 직제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 <개정 2020.03.01.>
3. “시행세칙” 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이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4. “내규” 라 함은 학사, 인사 및 보수 등 외부에 공시하여서는 아니 될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부분적이거나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 <전문개정 2021.09.01.>

- 제4조(효력) ①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③ 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
④ 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- 제5조(규정입안) ①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해당부서에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전략처에서 입안하거나 또는 해당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② 제 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.
③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 안을 작성 후 해당 규정을 학교 포탈시스템 등에 공지하여 5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2.16.>
④ 해당부서가 입안한 규정은 [별지1호] 및 [별지 2호]에 의거 미래전략처에 제출한다.
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- 제5조의2(규정심의위원회) ① 규정심의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, 미래전략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규정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2.06.01.]

- 제5조의3(회의의 소집) ①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제규정안을 제출한 제안 부서장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2.06.01.]

- 제5조의4(개회 및 의결정족수) 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[본조신설 2012.06.01.]

제5조의5(심의사항) 규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2.06.01.]

제5조의6(규정심의위원회 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전략처 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한다.

[본조신설 2012.06.01.]

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6조(제정 및 개폐) ①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.

1. 미래전략처장은 제5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2. 미래전략처장은 규정을 검토 후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 <개정 2012.06.01.,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3. 미래전략처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며, 이에 관한 실무는 미래전략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2.06.01.,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규정의 제정·개폐에 관하여 정관, 학칙,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규정을 제정·개폐하고, 그 결과를 [별지 1호] 및 [별지 2호]에 의거 미래전략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③ 세칙과 내규의 제정·개폐는 해당 부서에서 [별지1호] 및 [별지 2호]에 의거 입안하여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하며, 그 결과를 [별지1호] 및 [별지 2호]에 의거 미래전략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6.01.,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④ 상위규정과 배치되는 하위규정의 단순한 명칭 또는 개별 단어 등의 수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미래전략처에서 총장의 결재를 거쳐 일괄 수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⑤ 미래전략처장은 규정(안)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7조(제정형식) ① 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

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9조의2(법률자문위원) ① 본 대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조율 및 검토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, 행정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법률적으로 돕는 동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각종 협약체결 등에 대한 법적 검토
2. 법률 분쟁 및 소송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
3.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법률적 지원
4. 규정 제·개정 시 법률적 검토
5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 법률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1.09.01.]

제10조(원본 등의 관리) ① 제규정의 원본을 미래전략처에 보관하고 제 규정집을 편집 발간하여 배포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배포된 규정집은 업무주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폐된 부분은 즉시 가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규정의 해석) ①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.

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미래전략처장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,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,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석한다.

<개정 2014.07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

1.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2. 제7조 제⑤항 및 제⑥항은 이 규정의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최종 개정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규정심의위원회 발족에 따른 규정을 삽입하며,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제정된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제7조의 교내 제규정에의 적용) 본 규정 제7조의 제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은 교내의 제규정은 제7조의 제정형식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기존 제규정의 오류 수정의 특례)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제규정에 대하여 2021년 정책과제(“대원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”) 수행에 의해 확인된 명백한 오탈자, 띄어쓰기 오류 등은 동 정책과제팀이 정책기획단과 협의하여 수정하고 그 내용을 정책과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○○○ 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
주)각 항목별로 별지로 작성하여도 무방함